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년 01월 26일(금)]

PRUGIO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https://www.prugio.com/hb/2023/songnae)의 입주자 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위치 및 사업주체 등 현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청 주거정비과-1227호(2024.0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

사업주체	시공 회사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동화이엔씨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30번길82, 401호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121171-0006134	110111-2137895	3,410,140,470	732,152,696	1,076,900,000

2.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02월 06일(화)	02월 07일(수)	02월 08일(목)	02월 16일(금)	02월 21일(수) ~ 02월 25일(일) / 5일간	02월 27일(화) ~ 02월 29일(목) /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6:00)	견본주택(10:00~16:00)
장소	•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6-15번지 - 문의 : ☎1599-1099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3.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12개동 / 총 1,045세대(조합원공급 820세대(보류지 10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아파트 2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1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세대 포함합니다.]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단지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약식표기(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소계		
민영주택	2024000007	1단지	01	049.4730A	49A	49.4730	18.4500	67.9230	39.1260	107.0490	24.8767	21	3	1	2	2	1	9	12	3
		2단지	02	049.4730B	49B	49.4730	19.0810	68.5540	38.2480	106.8020	25.2110	27	3	1	2	2	1	9	18	3
		1단지	03	059.9590A	59A	59.9590	23.0800	83.0390	47.4190	130.4580	30.4128	87	8	2	19	9	2	40	47	12
		2단지	04	059.9590C	59C	59.9590	23.6750	83.6340	46.3550	129.9890	30.7567	90	9	3	19	9	3	43	47	12
합계												225	23	7	42	22	7	101	124	30

※ 대지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라인)	층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4.06.25	2024.10.25	2025.02.25	2025.07.25	2025.12.25	2026.04.25			
49A	21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2층	3	267,700,000	227,200,000	494,90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148,470,000
			3층	3	273,500,000	232,000,000	505,50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151,650,000
			4층	3	279,300,000	236,900,000	516,20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154,860,000
			5-10층	12	287,900,000	244,200,000	532,10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159,630,000
49B	27	204동 5호 205동 5호 206동 5호	2층	3	264,800,000	224,700,000	489,50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48,950,000	146,850,000
			3층	3	270,600,000	229,500,000	500,10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50,030,000
			4층	3	276,200,000	234,400,000	510,60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153,180,000
			5-12층	18	284,800,000	241,600,000	526,40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52,640,000	157,920,000
59A	87	101동 2,3호 102동 2,3호 103동 2,3호 104동 2,3호 105동 2,3호 106동 2,3호	1층	6	345,600,000	293,200,000	638,80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63,880,000	191,640,000
			2층	12	349,400,000	296,400,000	645,80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193,740,000
			3층	12	356,800,000	302,800,000	659,60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197,880,000
			4층	12	364,400,000	309,100,000	673,50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67,350,000	202,050,000
			5-11층	45	375,700,000	318,700,000	694,40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69,440,000	208,320,000
59C	90	201동 3,4호 202동 3,4호 203동 3,4호 204동 3,4호 205동 3,4호 206동 3,4호	1층	6	344,600,000	292,400,000	637,0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2층	12	348,300,000	295,600,000	643,90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64,390,000	193,170,000
			3층	12	355,800,000	301,900,000	657,70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65,770,000	197,310,000
			4층	12	363,300,000	308,300,000	671,60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201,480,000
			5-10층	48	374,500,000	317,800,000	692,30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207,690,000

4.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러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신청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기타지역)로 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합니다.